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6.10.05(수) 17:00

2017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
(충북인터넷데이터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)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2017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

(충북인터넷데이터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9월 27일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9월 28일

3. 제안 이유

- 중소·벤처기업에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구축한 충북인터넷데이터센터의 시설·장비 노후화로 서비스 확대가 불가능하여 노후 장비 교체·보강을 위한 충청북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■ 「충북인터넷데이터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」출연: 210백만원

○ 출연 목적

- 노후 시설·장비 교체 및 보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지식산업진흥원이 자체 추진하기에는 열악한 재정여건상 곤란
- 초기 사업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정보화 시설·장비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규모와 재정이 열악한 중소·벤처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위 기반조성

○ 출연 내역: 충북인터넷데이터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 1식

※ 세부내용 사업계획서 참조

○ 기대 효과

- 도내 소규모 중소·벤처기업에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정보화 서비스 제공으로 중소·벤처기업 창업 및 자립유도
- 충북인터넷데이터센터 운영 활성화로 자립경영 기반 마련 및 중소·벤처기업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

5. 검토의견

- '2017년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'은 도내 중소 및 벤처기업에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식산업진흥원에 구축한 충북인터넷데이터센터의 시설·장비 노후화로 서비스 확대가 불가능하여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을 위한 충청북도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.
- 다만, 동 계획안 1쪽 하단부에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으로 기대효과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